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08. 1. 29 (화) 14:00

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 검토보고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#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보고

1. 제출자 : 민경환 의원외 8인

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1월 14일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월 14일

#### 3. 제안 이유

○ 「에너지기본법」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도 및 시·군, 사 업자, 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신·재생에너지 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## 4. 주요내용

- 가.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·사회 구조로의 전환 등 기본방향을 기본 원칙으로 정함(안 제2조).
- 나. 도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하에 에너지 전담부 서를 설치·운용하도록 함(안 제4조).

- 다. 설치의무기관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신축건축물 허가신청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발급한 검토서 또는 설치 면제검토서의 첨부여부를 확인 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6조).
- 라.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 예산의 확보, 건축허가 신청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8조).
- 마. 도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 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 추가(안 제9조).
- 바. 도지사는 도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지역에너지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10조).
- 사. 도지사는 에너지의 종합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(안 제12조).
- 아. 공공부문에 신·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시범설치 등에 관한 규정(안 제21조).
- 자.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22조).
- 차. 도지사는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 나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4조).

#### 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는 2006년 1월 13일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 법」이 전부 개정・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신・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강화와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토대를 마련하는 등,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